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우리구 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 및 사이버마을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부서 지정 및 역할 (안 제3조 및 제7조).
- 나.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자료 관리방법 (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사이버민원실 설치 운영·관리 (안 제10조 ~ 제13조).
- 라.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마당 운영 및 홍보행사 (안 제14조 ~ 제16조).
- 마.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안 제18조 ~ 제19조).
- 바.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안 제20조 ~ 제22조).

III. 검토의견

1.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정 배경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전자정부 추진에 의거 각종 행정서비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온라인으로 점차 이관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활, 경제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민원서비스를 한 번의 접속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2000. 7. 서울시로부터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동 표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2004. 6. 22.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구를 포함한 10개구가 되겠으며, 또한 조문 구성은 (안 제2조) 정의를 포함한 7장,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동 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홈페이지 정보관리 (안 제6조)

현재 운영중인 우리구 홈페이지는 분야별로 “우리구 소개, 행정정보, 사이버민원실, 참여마당, 종로구 포털시스템, 종로구 사람”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분류 아래에는 각각의 업무별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어 이용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안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항목별 관리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침으로 부서관리자 및 코너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라도 담당자가 불분명한 공통자료의 경우 변동된 자료를 적시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홈페이지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V.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①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의 제·개정·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방문민원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방문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자치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

(2004. 6. 22 현재)

자 치 구	제 정 여 부	비 고
총 계	10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